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 5. 18.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년 5월 11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7년 5월 11일

라. 상정일자 : 제20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2017. 5. 1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서만원)

가. 제안이유

-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설계를 위해 교육, 취업훈련·일자리 및 지원시설, 위원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구 중·장년층이 건강한 인생 후반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인생이모작 지원대상 사업(안 제4조)
- 인생이모작 재정지원 사업(안 제5조)
-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위탁(안 제7조)
-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사용료·감면·반환 등(안 제8조 ~ 안 제10조)

-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예산 및 결산(안 제11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권대광)

- 본 조례안은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인생이모작 설계를 위하여 지원정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장년층이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 후반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출된 조례안으로 12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제정내용
 -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취업 훈련 및 일자리, 사회공헌활동, 건강증진, 문화·여가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인생이모작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사용료 부과·징수 및 사용료 감면,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인의 은퇴준비지수는 56점 ‘주의’ 단계로¹⁾ 대부분 사람들이 은퇴 이후의 준비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실제 은퇴 준비에 대한 실행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중·장년층들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은퇴 이후 삶의 변화를 인식하고 성공적인 사회 참여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은퇴 이후의 삶을 단시간에 준비하기 어려운 만큼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우리구 중·장년층이 후반부 인생을 면밀하게 준비하고 성공적인 인생이모작을 설계하여 활기찬 사회참여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됨.

1)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한국인의 은퇴준비 2016’

- 은퇴준비지수는 ‘위험’(0~50점 미만), ‘주의’(50~70점 미만), ‘양호’(70~100점)로 구분된다.

-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223 호
----------	---------

제출연월일 : 2017. 5.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우리 구 중·장년층의 제2의 인생설계와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교육, 취업 훈련, 사회공헌활동 등의 인생이모작 사업,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위원회 등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장년층 지원정책의 추진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장년층 지원대상 사업 (안 제4조)

나. 재정 지원 사업(안 제5조)

다.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라.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의 근거(안 제7조)

마.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이용자의 사용료 부과 등 (안 제8조 ~ 안 제10조)

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예산 및 결산(안 제11조)

사. 중·장년층 지원정책 등 자문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 설치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4)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7.3.30. ~ 4.19. /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내역 : 중 장년층 인생인모작 지원 운영비
2. 비용추계 기준
- '17년 서울시 세출예산서 및 영등포구 세출예산 (시 구 매칭사업)
3. 비용추계 상세내역 : 일반운영비 및 영등포50플러스센터 운영비
4.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세입		0	0	0	0	0	0
	소계(a)	0	0	0	0	0	0
세출	인생이모작 지원	602,000	602,000	602,000	602,000	602,000	3,010,000
	소계(b)	602,000	602,000	602,000	602,000	602,000	3,010,000
□ 총 비용(a-b)		602,000	602,000	602,000	602,000	602,000	3,010,000

5.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국비		0	0	0	0	0	0
시비	지방세수입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1,750,000
	세외수입	0	0	0	0	0	0
	지방채 등	0	0	0	0	0	0
민간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합계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1,750,000

6. 추가의견 :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장년층"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교육 지원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건강증진 지원사업
 5. 문화·여가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② 시설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7조(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 ② 제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등) 구청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 등을 일부 감면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사용자가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의 예산 및 결산) ① 시설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중·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